

구직등록 확인증	
등록기관명	
구직등록번호	
성명	
발급 담당자	
연락처	
구직등록 유효기간	
「직업안정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5항에 따라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합니다. 년 월 일 직업안정기관명	

※ 정확한 구직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취업을 하거나 구직신청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해당 사항을 구직신청을 한 직업안정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